

저작권으로 배부른 사람 ..정작 따로 있다.

## 저작권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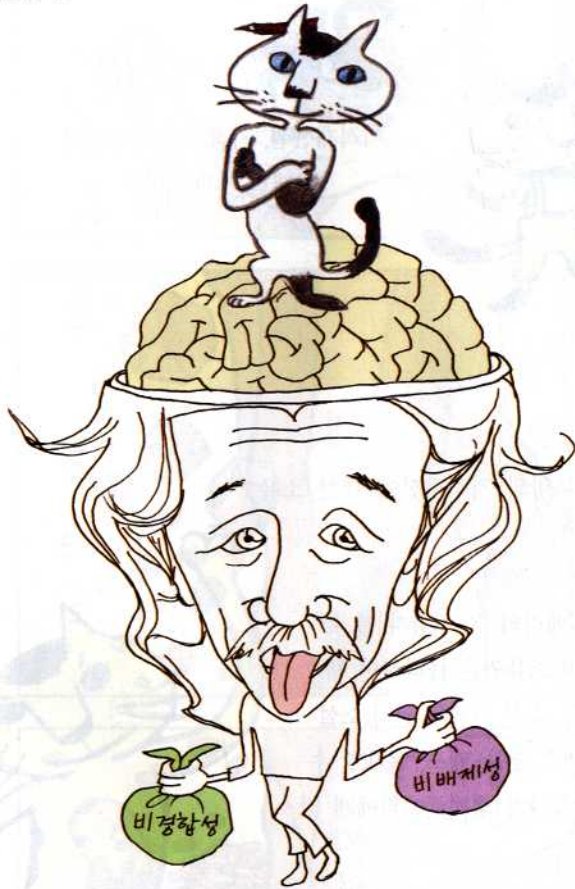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해.

예를들어 생똥쥐베리의 '어린왕자'를 누군가 산다면 그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책 한권에 국한될 뿐, 소설 자체의 권리(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 배포, 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창작자인 생똥쥐베리에 있지.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산 '어린왕자'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거야.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유체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햄버거와 같은 물질적 생산물은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없어지진 않는다.



비경합성이란? 내가 어떤 지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비배제성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 전파된 이상 그 사람이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힘들음을 말한다.  
따라서 여타 물질적인 재화와 같은 유사소유권을 창작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어떠한 지식도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기반이 없었다면 창출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지식과 정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협력의 산물이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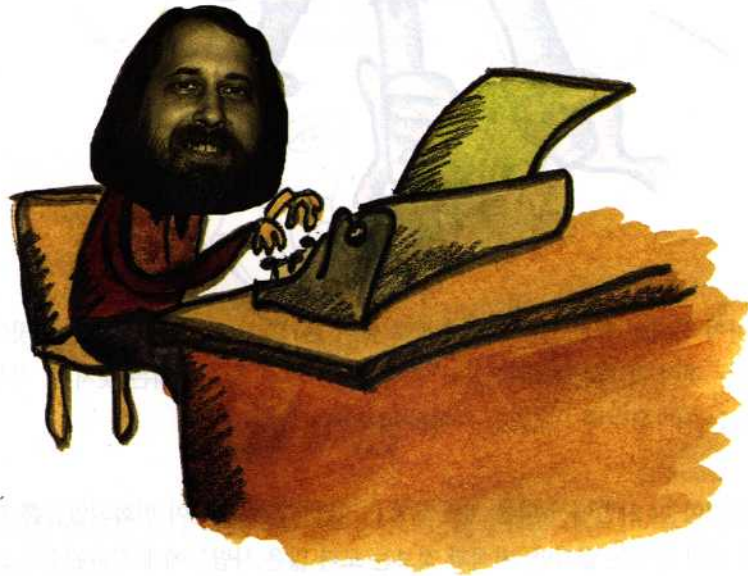
또한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이 옮겨짐으로 해서 내 초의 불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전체의 밝기가 더욱 밝아지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는 전파될수록 사회적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

어떤 물건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면 소유권이 변화되었을뿐 사회적인 가치 증가는 없지만, 지식과 정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지식과 정보의 전파, 공유는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지식과 문화'는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이란 개념은 지식과 문화에 유체물과 같이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 또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다. 지적권의 이러한 경향은 196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스톨만은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의문한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은 각 법 체계 내에 창작자의 사적 이익과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하면서, 일정하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을 제한한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 내에서도 일정한 경우 그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허의 강제 실시나 저작권 법의 공정이용 조항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보호? NO! 문화의 향상 발전!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한다\*.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저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면,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제약하여 2차적인 창작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우선 그 보호기간에 있어 제한된다. 여타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은 정한 기간동안만 보호된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다. 보호기간 내이라도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부른다.

\* 국내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요즘 같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변화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복사기, 비디오 테크, 인터넷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항상 저작권과 충돌해 왔다.

\* 미국은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장악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은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일반화됨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자의 권리에 '전송권'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전송권은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과 문화적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리거나, 소리바다 등을 통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요즘은 누구나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에 일기도 쓰고 사회나 문화에 대한 비평도 한다. 누군가가 김춘수님의 '꽃'에 대한 비평을 올린다. 물론 시 전문과 함께, 비평을 읽는 사람들이 시를 먼저 감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내가 산 CD를 이용해서, 배경음악으로 누구누구의 노래를 깔아줘도 저작권 침해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실험하려는 사람들도 포기해야 한다. 고비용의 저작권료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은 창작 환경도 변화시킨다.

누구나 창작물의 수용자이며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에 2차 창작물의 눈부신 발전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생산물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UCC라 할지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사나 음반사 등 권리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가 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UCC를 만드는게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려놓으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영화나 음악을 편집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

저작권의 원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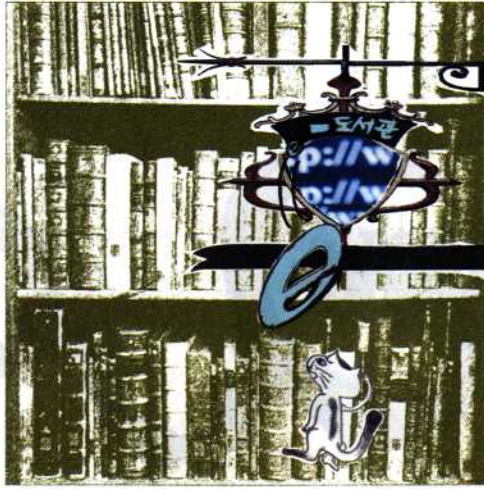
우리들은 비영리적 생산자들이며 어쩌면 어쩌면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할지도 모르지. 나를 표현하려는 욕구도 다른 이와는 소통도 중요한 우리들은 문화를 향유하는 동시에 생산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소리바다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엠피쓰리(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소리바다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엠피쓰리 음악 파일 교환과 음악 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이다.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저작물 공유의 불법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의 영역이 위축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1월 저작권법에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 이용자들은 컴퓨터로 접속해서 열람을 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야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도서관 내에서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의 수도 제한하였다. 타 도서관에 전송할 때에는 도서관 간에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여 사실상 타 도서관에서의 열람도 제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보겠느냐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서적에 대해서는 원격 열람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학술 논문이나 절판된 서적에 대한 접근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의 보호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이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작권의 주체는 낭만적 저자가 아니라 기업이 된 상황이다. 저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일 뿐이며 저작권은 투자인 정보문화기업에 넘어가 버렸다.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이 되었을 때,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달라진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독점을 통한 이윤획득의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이들 기업들은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협정인 트립스(TRIPs) 협정의 경우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전자회사인 IBM 등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놀아나는 정부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있다.

문화기업의 독점 보장을 위한 저작권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98년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을 통해 자국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후 FTA를 통해 다른 나라에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알려진 1709년 앤 영왕법(Statute of Anne) 제정 당시에는 보호기간이 최초 14년이었으며, 저작자가 살아 있을 경우 14년의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이후 보호기간은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는데, 현재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이나 WTO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규정된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이는 최소 보호기간이며, 각 국은 이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사실 현행 보호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소수의 유명 저작물을 제외하며,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발행 후 10년~20년 이내에 상업적인 가치가 소멸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장에서 절판되어 쉽게 구할 수 없는 서적이거나 음반조차도 저작권에 묶여 자유롭게 복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와 같은 '소수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운명에 있었던 '미키마우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소니보노 법'은 미국 내에서도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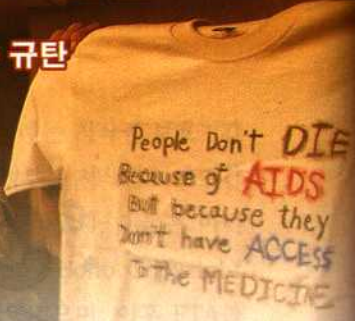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저작물이 더 널리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작자들도 많다. 혹은 비영리적 이용에 한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자들이 별도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의 표시나 이용 조건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돕보하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 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국내에는 정보공유연대의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2004년 공개된 '정보공유라이선스' \*\*가 있다.

\* <http://creativecommons.org>

\*\* <http://freeuse.or.kr>



#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푸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스프라이셀은 '글리벡'복용 후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백혈병치료제이고, 푸제온은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에이즈치료제입니다.

2008년 1월 14일, 초국적제약회사 브리스틀마이어스스콕(BMS), 로슈(Roche)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스프라이셀,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연간 5,000만원과 2,000만원이 넘는 살인적인 약값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셀은 진료상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등재여부와 약값이 결정됩니다. 푸제온은 협상이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약제'임을 재검토하겠다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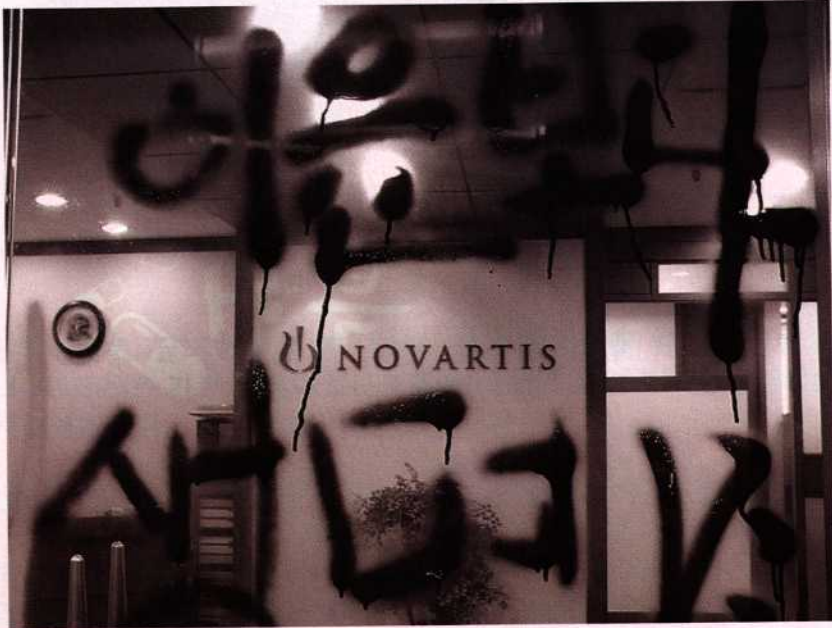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은 단일 사례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예고되어 있는 신약들의 약가협상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만을 위해 약값과 공급을 제약회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다국적제약회사들의 노름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약회사 마음대로 매긴 약값에 생명이 저울질 당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12일



- 168 세계인권선언 제27조
- 169 내 친구 덕이
- 177 특허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 친구 덕이











나는 말이야 앞으로 오래 오래 살아서  
대학도 가야하고, 뼈빠지게 돈도 벌어야  
하고, 또 결혼해서 배 아파가며 자식  
세끼도 낳아야 하고 또...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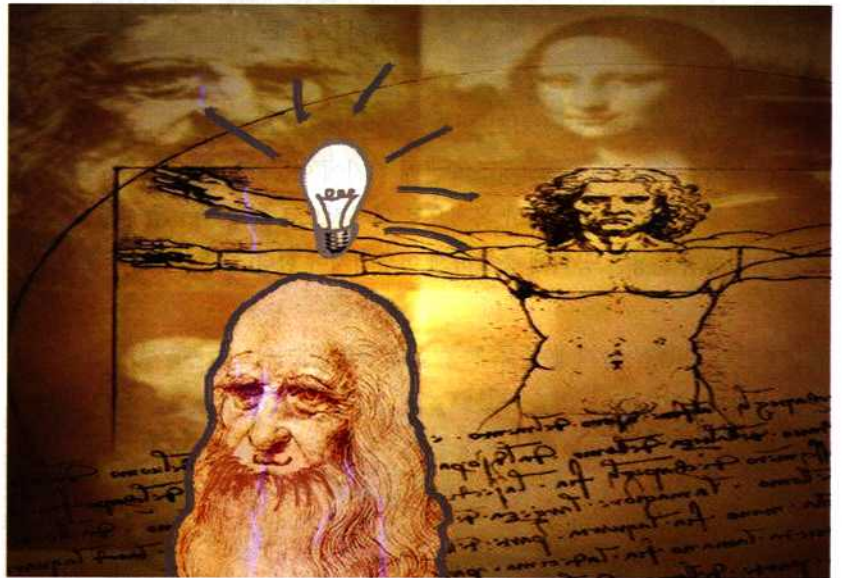


덕아...



어느 따뜻한 봄날, 덕이는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덕이가 아픈 건  
남보다 돈이 없기 때문이었다.  
생명보다 이윤이 강조되는 부조러 때문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다..

## 특허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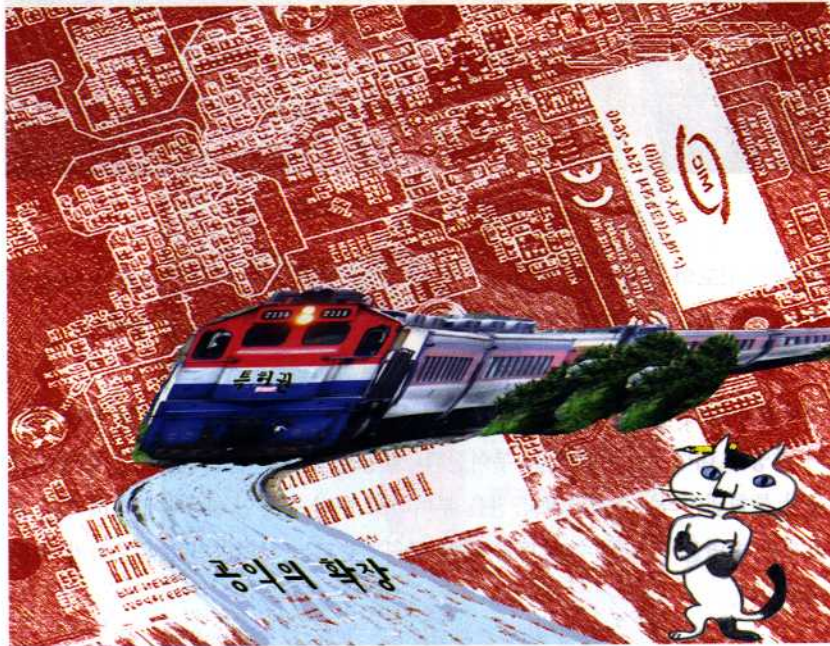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기간(특허출원 후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독점권을 부여할 만한 고도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한다. 발명을 공개한 출원인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고 일반 공중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권은 기술축진을 통해 사회이익을 실현하고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개인에게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는 배타적 재산권이다. 강력한 배타적 권리는 '발명의 내용 공개'가 실질적으로 기술 확산에 기여하며, 해당 기술 내용이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배치되지 않을 때에만 정당하게 부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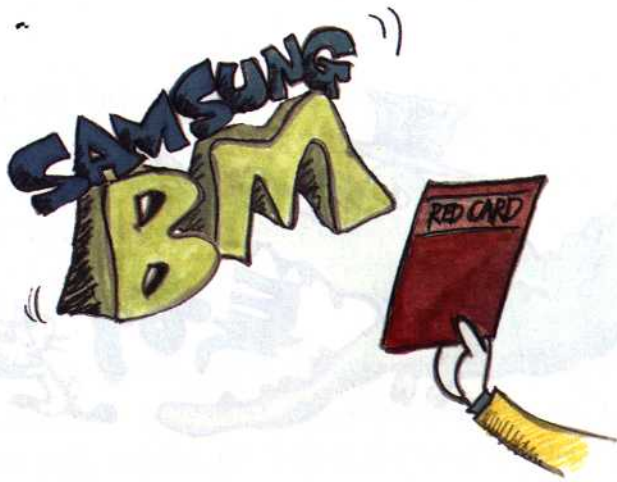
때문에 특허법을 기술적, 절차적 법으로만 바라보아서 특허요건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특허를 주는 것은 특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제도이며, 따라서 특허법의 운용은 공익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이 전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업 방법(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기술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원래 영업 방법(BM : Business Model)은 특허가 될 수 없었다. 어떠한 기술상의 혁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발명의 시행 과정에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BM특허는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터넷 BM 특허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 기술은 특허권 없이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독점기간 20년은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996년 10월 삼성전자가 출원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도 이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진보네트웍센터가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결국 특허 무효를 이끌어낸 바 있다.

\* 특허 명세서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문장을 통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



진보네트웍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특허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및 장치'에 대한 것으로, 학습, 시험, 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단지 웹에 적용한 것일 뿐, 특별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일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01년 2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웍센터는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이 소송은 BM 특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여전히 BM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각 국의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언이 나온 배경은 전 세계적인 에이즈(AIDS)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8,000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 중 95%는 저개발국에 살고 있다. 에이즈 치료약은 있지만 비싼 가격과 열악한 보건 체제로 인해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현재 AIDS 치료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받는 환자들은 단지 1,000~2,000명(0.043%~0.086%)에 불과하다.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로 인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대립은 특허권을 둘러싼 세계적인 이슈이다.



의약품 특허는 현실적으로는 제약회사에 대한 정부 인가 독점체제로 봐야 한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생명'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보장받는 '독점적 이윤' 추구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윤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거부하기도 한다.

제약회사 로슈는 '푸제온'이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2003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 1인당 연간 약 2만 달러(약 2천만원)에 시판하였다. 하지만, 로슈는 한국에서 푸제온을 판매하지 않는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에 못 미치는 보험약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약물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이윤'에 의해 좌우된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약은 개발되지 않는다. 1975년에서 1997년에 개발된 1,223개의 새로운 화학물질 중 혁신적 신약으로 생각되는 379개(30.9%)중 저개발국가에서 주로 발병하는 열대병과 결핵 치료제 등은 13개(1%)에 불과하다.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라는 제도가 있다. 강제실시란 국가 위급 상황이나 공중의 건강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발명의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면, 국영기업이 약품을 생산하여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의 제약회사가 정부 허락을 얻어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강제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합당한 보상은 하게 된다.

특허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의약 발명 강제실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진국과 초국적 제약 회사들의 세계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자나 기계 분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특허가 존재하여 어느 한 기업이 하나의 제품에 대해 기술 독점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의약 분야에서는 하나의 특허, 즉 하나의 의약품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독점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한, 신약의 개발 비용이 막대한 것과는 달리, 일단 개발된 약은 모방하기가 쉽고,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때문에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독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라지게 된다. 선진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 발명의 강제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 : 특허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이와 품질, 용량, 효능이 같은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부른다. 신약, 즉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이 없어지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무척 싸다.



초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등 선진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 3 세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강제실시를 하기는 어렵다.

2007년 1월 태국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태국은 현재 HIV/AIDS 감염인이 70만 명에 이르는데, 이중 약 8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2차 치료제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1차 치료제보다 14배나 비싸다. 칼레트라도 2차 에이즈 치료제이다. 태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한 것은 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 애보트는 강제실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태국에서 자사가 공급하는 7가지 치료제를 팔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태국정부가 이에 굴복하지 않자, 결국 애보트는 2007년 4월 10일, 칼레트라를 40여 개국에서 연간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애보트를 비롯한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초과이익을 거두어 들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강제실시를 둘러싸고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이 충돌한 적이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우리나라에서 한 알(capsules)에 약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 달에 약 90만원~15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약의 실제 제조원가는 1,000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지난 2001년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을 생산하는 스위스계의 초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에 대해 약값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오히려 글리벡을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고 환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2002년 1월 환자단체들은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특허청을 방문하였을 때, 강제실시 청구를 위한 제반 서류 조차 구비되지 않았다. 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강제실시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특허권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해 '건강하게 살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특허권이 인간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 우월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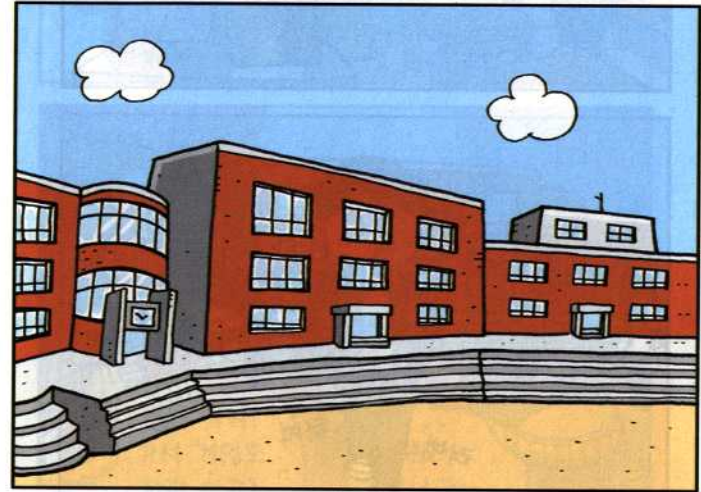
## 평등권

- 188 세계인권선언 제2조
- 189 당신들의 평등을 위해
- 199 평등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학교에서도  
정보실을  
설치하였고

학습과제물,  
가정통신문  
등을 인터넷  
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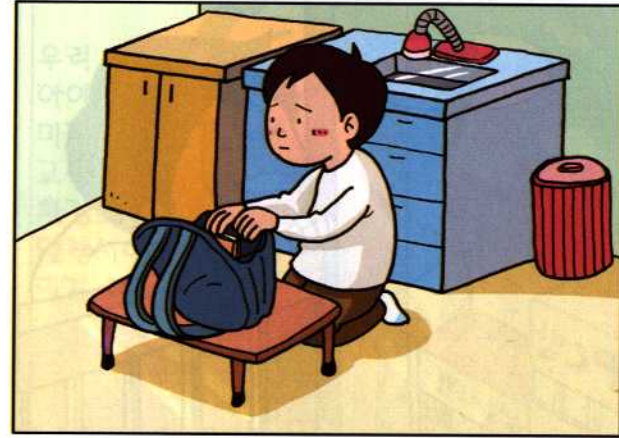
엄마는 오늘도  
야근이라는데...  
숙제 꼼꼼하게 챙겨

빼먹지  
말고..

알았다니까~



이런 방침에 따라  
선생님들도 일선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  
법에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정보활용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엄마, 나는 내일도 숙제 못해갈 것 같애..  
 다른 애들 다 하는 인터넷 게임도 몰라서  
 왕따 취급을 받는데..  
 일론 자라서 돈 벌어서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컴퓨터를 못해도 취직할 수 있을까?



## 평등권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제적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지역에 의한 차별...

이런 사회 불평등은 정보화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개선되는가? 아니면 악화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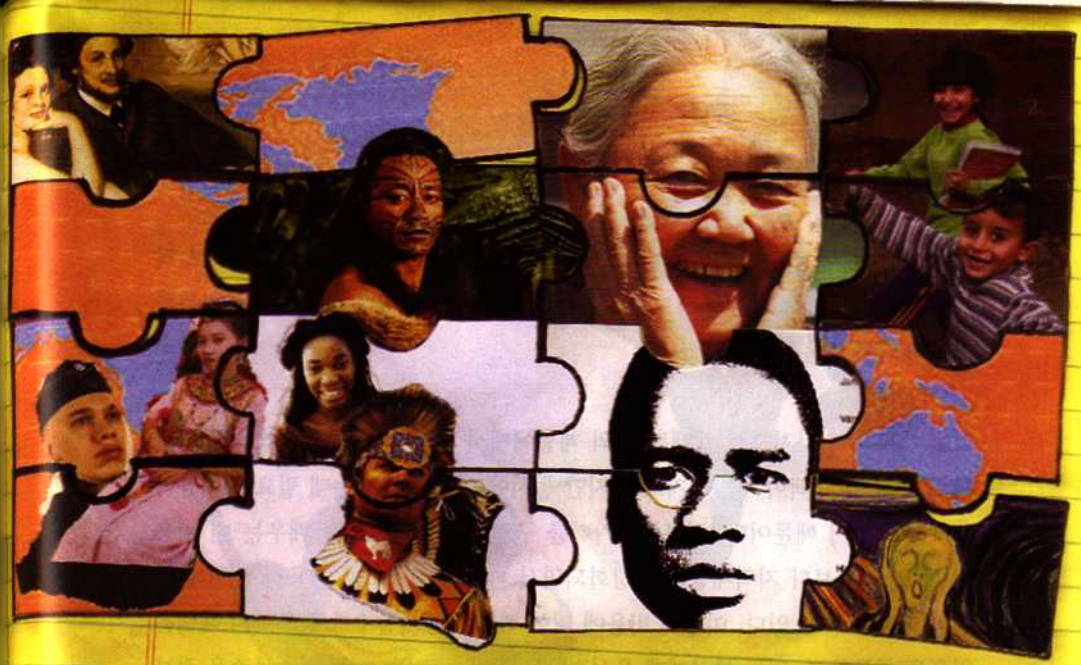


## 불평등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한다. 단지 '차이'에 지나지 않는 어떤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소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견상 중립적이어도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해지는 이른바 간접차별도 차별에 속한다.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계급으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서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모든 차별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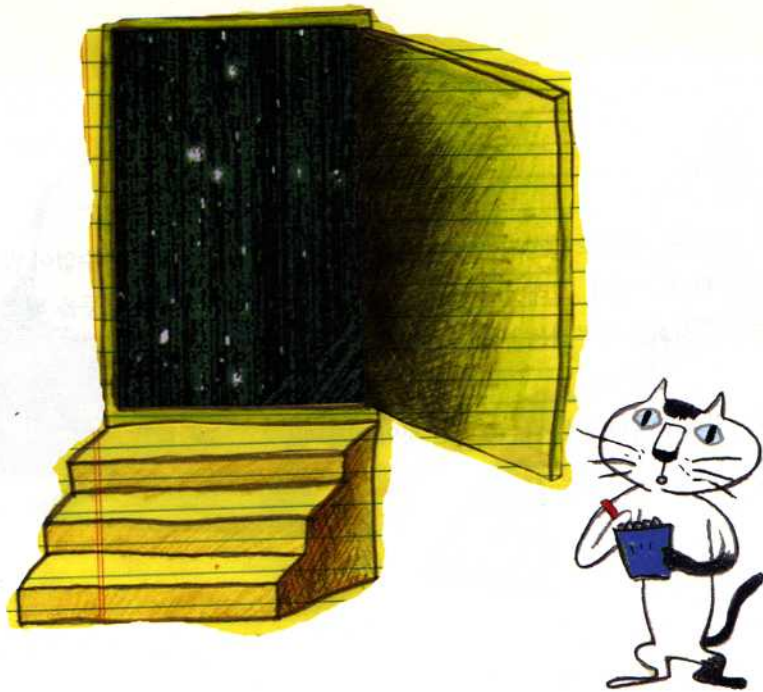
그러나 불평등은 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차별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정보화로 인한 불평등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정보 격차는 정보화가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격차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서 나타난다.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그로 인한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법을 배우는 데 비용이 들고, 과거보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치루는 비용도 늘고 있다.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수록 정보화의 혜택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급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저소득층은 정보화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적게 이용하거나 쇼핑이나 오락 정보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 컴퓨터 관련 직종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온라인에 성차별적, 성폭력적 인사도 많다.

장애로 인한 격차도 심각하다. 시각·청각·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의 이용을 돕는 장비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농촌 지역도 정보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농촌은 도시보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원격 의료나 원격 교육이 필요한데도, 관련 서비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보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는 부유한 나라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고,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가 백인, 남성, 고소득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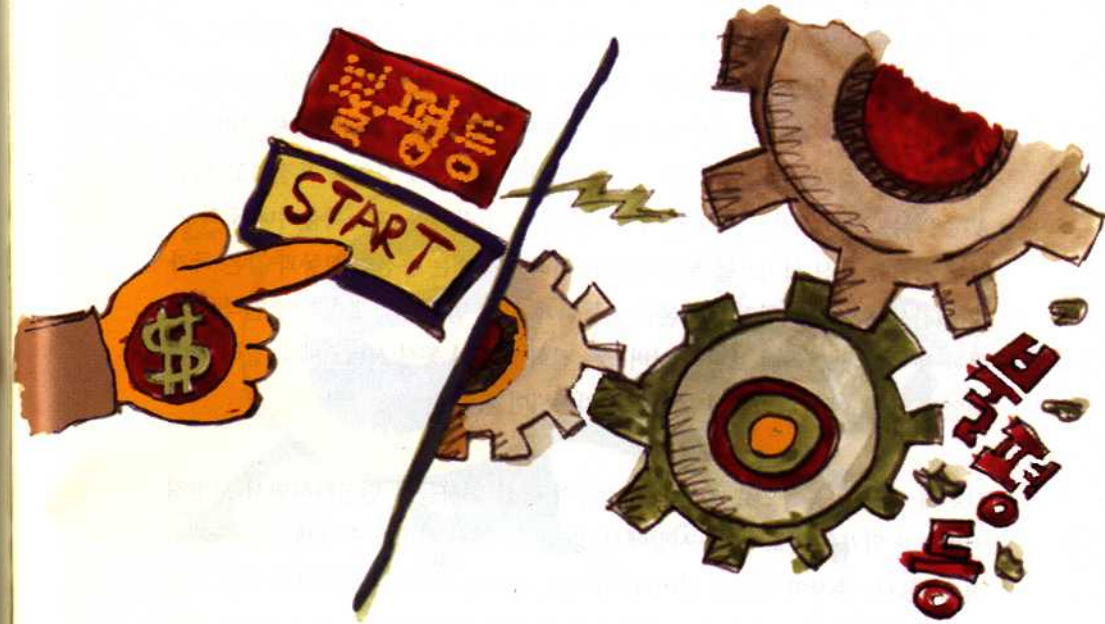
## 정보 불평등의 원인

정보화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정보화가 시장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정보가 생산되고 이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나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전화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가 민영화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도서관과 같은 공공 정보시설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상품으로서 생산, 분배, 소비된다.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주요 정보 산업은 거대한 초국적 기업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다.”

- 허버트 실러 <<정보 불평등>>의 저자



정보 불평등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정보 불평등은 고용, 교육, 일상생활 등 다른 분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불평등을 다시 강화한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많이 소유한 '정보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정보가 부족한 '정보빈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 불평등은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

###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편적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 산업이 먼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찌기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면서 전화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화 산업을 독점하고 있던 AT&T라는 통신 회사는 사내 수익 배분을 통하여 장애인, 저소득층이나 소외 지역에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통신이 교통과 같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정치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토대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는 전화 이외의 통신 서비스에도 널리 확대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다.

그런데 최근 공공적으로 운영되던 각국의 통신 회사들이 민영화하면서 보편적 서비스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 공공 규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통신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정보 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 정책이 이 문제를 방지한다면 정보 불평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

### 보편적 접근 universal access, universal design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보화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조사나 투표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플러, 네이스빗 등 미래학자들은 낙관적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자적으로 공동체 정책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다. 의사결정권을 국회와 같은 대의 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

퍼블릭 액세스 public access



방송 통신이 융합되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이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퍼블릭 액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국민이 직접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퍼블릭 액세스는 방송에 먼저 도입되었다. 20세기 중반 대기업이 방송 산업을 장악하면서 상업적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방송할 수 있는 공공 채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1960년대 말 캐나다 국가영화진흥국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가난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후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미국·독일 등 여러 국가에 퍼블릭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공중파나 케이블TV에서 시청자 참여를 위해 공개된 퍼블릭 액세스 채널도 늘어났다.

퍼블릭 액세스 정책은 시청자가 단순한 수용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매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구나 매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책은 정보사회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정보 민주주의로

'정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정보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정치 체계를 뜻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하여 정보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만으로 정보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 격차의 확대를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공공성이 축소된 정보화 과정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상품성이 없는 정보는 사회적으로 중요해도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논리를 극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보편적으로 서비스하고 도서관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 정보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한편, 보편적 설계와 퍼블릭 액세스가 공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 자체의 공공성도 확충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나 이용의 권리가 지적재산권으로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사회 불평등에 있다. 계급 불평등, 성 불평등, 장애로 인한 불평등 등 여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정보 민주주의로 가는 노정이라 할 것이다.



# 특작공간

1년인가 2년 전에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해야 열람실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물론 도서관 대출카드가 있다면, 카드 만들 때 한 번만 기입하고 그 카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안 가져왔거나 등록 안 한 사람은 반드시 다 눌러야 했죠. 제가 다니는 인천지역의 3군데 도서관이 모두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봤습니다. 알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ㅋㅋ



**덩야핑씨**  
<http://blog.jinbo.net/taiji0920>

알겠다는 게, 답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해보긴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한다는 뉘앙스였는데 그 뒤 얼마 안 돼서부터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전부다 바뀌었더라고요. 진작 좀 바꾸지.

내가 말한 건 아이디 같은 걸로 대체해달라는 거였는데, 암튼 뭐 생년월일 앞자리래 봤자 막 나이 속이고 찍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린 척 카카야? 나 때문에 바뀐 건지 워낙 인권위가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던 건지 각 도서관이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교묘

정보인권엔 대한 감수성은 비교적 무딘 나인데다 지금도 필요하면 그냥 주민등록증을 내밀기까지 하는 곤란한 처녀이지만 이런 성공담(?)이 있다규. 카카 참 주민등록증 뒤에 지문에다가는 지문날인반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예전에 대학로에서 우연히 받았던 건데 우리 언니가 자기도 달라고 했지만 구할 길이 없네효. 판소리임



**무화과씨**  
<http://blog.jinbo.net/stego>

바로 어제 술 마시다 술집 찾아서 온수역에서 역곡역으로 걸어가는데 큰길가에 CCTV관련 기기들 파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광고효과를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길가를 향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가게 유리 안에 실시간으로 그 CCTV가 찍어내는 영상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길을 친구와 걷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CCTV에 노출되다니.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술 마시러 가는 걸 누군가 보고 있다니. 오썩~

만화로 정보인권을 우찌 표현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봤다. 비밀프로젝트라... 언제 또 이런 걸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니 만화 그리는 분과 다섯병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던 모습을 본적이 있구나.

정보인권이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특허, 정치적 권리, 노동권, 평등권으로 구성. 구성이 특이하네, 저작권과 특허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할 테고 나머지는 옹호되어야하나 침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병렬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 저작권은 저작'권'이라고 하고 특허는 특허'권'이라고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만화를 하나씩 클릭.

타이레농으로 시작한 걸 보니, 음, 특허VS생명에 대한 얘기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놨나, 이러면서 만화를 따라 내려갔다.

말풍선의 실체는 덕이. 영이, 철이, 그리고 덕이? 그 이름 참 푸근하네, 이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아! 하는 순간 눈물이...



**름달씨**  
<http://blog.jinbo.net/rmdal>

지난번 그가 꿈속에 다녀갔다. 꿈에서는 그에게 하루가 남아있었다. 그는 담담한 모습으로 이별인사를 했다. 꿈에서라도 그를 보니 마음이 좋았다. 그는 갑자기 가버렸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예고했었고 안타까움과 슬픔을 머금은 큰 눈으로 여러 차례 소망을 얘기했었지만 나만 못 알아듣고 갑자기 보낸 것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미래를 기약하며 현재를 살지 못했던 반성, 허무함, 외로움은 뒤늦게서야 요동치는 걱정이 되어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이 짓거리도 고만해야지, 뒤늦게서야 울고불고 한들.

덕이... 기억 속에서 그리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신을 만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ella 4hacke bright igoomy ikd01

next421 **positro** nenmai twofus

eeseob\_n shincl wangkm shincl  
eeseob\_n mari supul2 SHHA kambe

**peacepia** anggoo10 tae21 Hserin

tae21 may delphy **jinbo13** delphy

action horong arcase meiste  
rainme young82 redgan damon abird33

이 분들의 뒤를 이어 후원회원이 되고싶으시면...

쌀을 주셔도 되고,  
반찬을 주셔도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을 주셔도 되고, 알콜(?)을 주셔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으랏차차 기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메일링리스  
트와 호스팅계정, 즐겁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 (액트  
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립 영화관 할인  
및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http://center.jinbo.net/member/new.php> 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예금주 진보네트워크센터

